

국공립 가양7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보고서

2020년 6월 12일
미래·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 가. 제출일자: 2020년 6월 8일
나. 제출자: 강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0년 6월 10일
라. 상정일자: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의결(2020. 6. 12.)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이대철 가족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국공립 가양7어린이집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기원과의 협약 기간이 2020년 12월 31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 해당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다른 사무방식보다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 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사업 개요

- 시설개요

어린이집명	소재지	면적(m ²)	정원/현원
국공립 가양7어린이집	강서구 허준로 209(가양동)	326.91	79/56명

- 위탁사무내용

- 어린이집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 영유아 보호와 교육, 예산계획 및 집행, 보육교직원 임용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
- 부모교육 및 가정과 지역사회간의 연계 및 교류

- 위탁기간: 2021. 1. 1. ~ 2025. 12. 31. (5년) 예정

- 선정방법: 공개경쟁 모집에 의한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소요예산: 244,303천원(1년)

2) 추진일정

- 2020. 9월~10월: 위탁체 공개모집 및 심의

- 2020. 11월~12월: 협약체결 및 인수인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부칙 제3조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정우숙)

- 본 동의안은 국공립 가양7어린이집 운영사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기원과의 협약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어린이집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주관부서에서 완료하였습니다.
- 가양7어린이집의 민간 재위탁은 수탁자가 변경되는 만큼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 기관을 선정하고, 철저한 인수인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붙임 관계법령 1부.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연례 반복적 사무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부칙 제3조(승인 및 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치사무의 경우 제7조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 2와 같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개정 2019. 12. 3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신청자격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마.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그 밖의 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바.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의 심사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 사.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 아.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2.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계	100

3. 심사결정

- 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나.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 운영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4.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